

# 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청년아동과

제정 2025. 12. 26 조례 제2338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이천시 청소년의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도박”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.
3. “도박문제”란 가족 및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, 재정적·사회적·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박 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청소년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고, 도박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실태조사)** ① 시장은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상위 법령 등에 따라 수행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원사업)** 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청소년 및 부모 대상 도박 예방 교육사업
2. 도박문제 위험군 청소년 발굴 사업
3. 도박문제에 대한 상담 연계 및 지원 사업

이천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

4. 그 밖에 도박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협력체계 구축 등)**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**제7조(비밀준수 의무)**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